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디자인공보(S)

(45) 공고일자 2011년04월20일
(11) 등록번호 30-0596395
(24) 등록일자 2011년04월14일

(52) 분류 B2-51AA
(51) 국제분류 02-06, 06-13
(21) 출원번호 30-2009-0027169
(22) 출원일자 2009년06월19일

부분디자인(M01)

(30) 우선권주장
JP-D-2008-032972 2008년12월25일 일본

(73) 등록권자
가부시키키가이샤 시마노
일본국 오사카후 사카이시 사카이쿠 오이마츠쵸 3쵸 77반치

(72) 창작자
키타와키 히로아키
일본국 590-8577 오사카후 사카이시 사카이쿠 오이마츠쵸 3쵸 77반치 가부시키키가이샤 시마노 나이
시라이시 마리코
일본국 590-8577 오사카후 사카이시 사카이쿠 오이마츠쵸 3쵸 77반치 가부시키키가이샤 시마노 나이

(74) 대리인
김성호

담당심사관 : 한상규

(54) 낚시용 장갑

입체디자인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낚시용 장갑

디자인의 설명

1. 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낚시용 장갑이다. 이 디자인에 관련되는 물품은, 손목부에 정면으로부터 보았을 때 가로로 긴 대상(帶狀)의 신축성이 높은 직물을 배치한 것에 의하여, 장갑을 착용할 때에 손을 넣기 쉽게 하는 것과 함께, 장갑 착용 시에 손목의 움직임에 맞춰 손목부의 직물이 손목에 피트(fit)하는 것이다.
2. 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재질은 천연섬유 또는 인조섬유로 된 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에 의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하고 있다. 참고도 1을 제외한 상술한 도면에 있어서, 연회색으로 착색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즉, 진회색으로 착색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다.
4. 배면도에 도시된 문자는 디자인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5. 사시도는 정면, 우측면, 평면으로부터 본 도면이다.
6. 참고도 1은 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낚시용 장갑의 사용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대응 참고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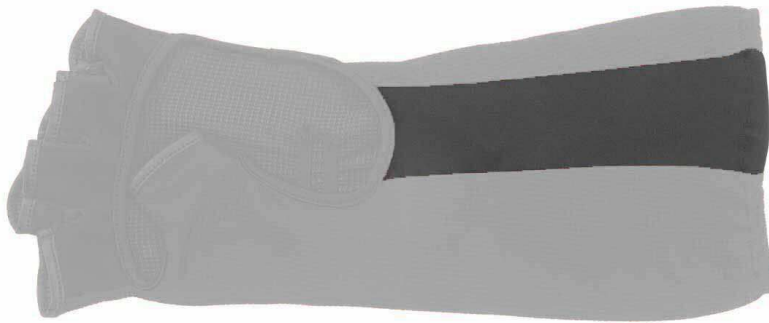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의 낚시용 장갑 디자인은, 손목부에 정면으로부터 보았을 때 가로로 긴 대상의 신축성이 높은 직물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에 의해, 공지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을 느끼도록 창작한 것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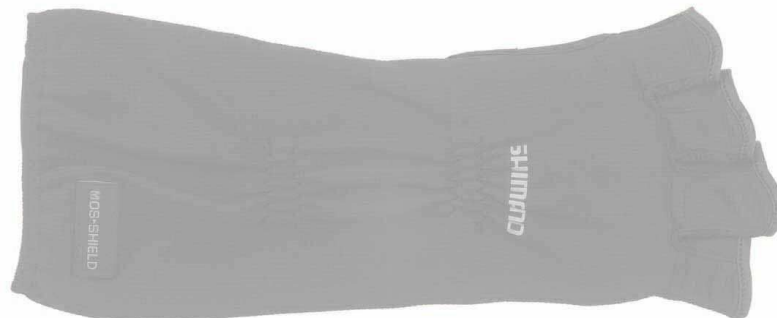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1

사용상태를 도시하는 도면대용 참고사진

